

대법원 2022. 10. 27 선고 2022다2604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

피고, 상고인

AAA

원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

피고, 상고인

AAA

판 결 선 고

2022. 10. 27

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.07.12. 선고 2021나107235 판결

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.07.12. 선고 2021나107235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○○○ 판사